

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

I 추진방향 및 25-1학기 주요성과

- **추진방향**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, 관련 법령*에 근거하여 학자금대출 시행^{'09년~} 및 지속 확대
*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
- **지원성과**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1.7%의 대출금리로 총 31.1만 명에게 약 1.13조 원의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지원('25.4월 기준)

II 2025년 2학기 주요 추진내용

❖ 25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 내용 반영하여 「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」 및 학자금대출 시행계획, 업무처리기준 등을 수립·개정

- **대출금리**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계층의 학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금리인 1.7%로 동결 유지

< 최근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>

'18년	'19년	'20-1	'20-2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-1	'25-2학기
2.2%		2.0%	1.85%			1.7%			1.7%

- **휴일신청**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을 평일+주말(공휴일 포함)까지 확대하여 대출 수요자의 신청 편의성 및 국민의 공공서비스 혁신 체감도 제고
※ '2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 제출(1차 통과, 2차 심의중)

< 학자금대출 주말 및 휴일 신청 개선(안) >

구분	기존	개선
평일	09시 ~ 24시 (단,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)	09시 ~ 24시 (단,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)
주말 및 공휴일	신청 불가	

- **특별승인 간소화** 등록금 자비 납부 학생의 학자금대출 전환 희망 시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생·대학 업무 편의성 제고
 - ※ (현장목소리) 군 제대를 앞두고 복학 준비하는 학생이 군대 내에서 기등록자 대출 시, 대학 추천 요청서 양식을 학교로부터 받아 수기 서명 후 우편을 보내야 해 불편 호소
- (변경사항) 기존 7단계 절차에서 5단계로 절차 간소화 및 안내강화
 - ① (양식생략) 대학에서 학생으로부터 징구하는 “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” 징구절차 생략
 - ② (안내강화) 특별승인 관련 학생 본인 동의 절차 시스템 개발 및 주의사항 재단 직접 안내 강화(횟수제한, 목적 외 사용 금지 등)
- 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간소화 동일 적용(학습비 기납부자 특별추천)

< 자비납부자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절차 변경(안) >

변동	유지	유지	생략		유지	강화	유지
기존 (7단계)	기등록 처리 (자비납부)	기등록자 학자금 대출 희망	특별승인 추천요청서 서류 안내	특별추천 요청서 수기 작성 제출	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	대출심사 및 승인	기등록자 대출실행
	대학	학생 → 대학	대학 → 학생	학생 → 대학	대학	재단	학생
변경 (5단계)	기등록 처리 (자비납부)	기등록자 학자금 대출 희망	특별승인대상 심사 및 추천			대출심사 및 특별승인 주의사항 안내	기등록자 대출 실행
	대학	학생 → 대학	대학			재단	학생

Ⅲ

향후 일정

- ('25. 6월 말) 관련 고시 개정
 - ※ 「'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」
- ('25. 7. 2.) '25학년도 2학기 대출 금리 및 대출 신청·접수 관련 보도
- ('25. 7월~11월) '25학년도 2학기 대출 신청·실행
 - 등록금 대출 (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포함) : 7.2.(수)~10.23.(목)
 - ※ 분납연계대출 7.2.(수)~11.18.(화)
 - 생활비 대출 신청 7.2.(수)~11.18.(화)

붙임 1
학자금대출 제도 비교

※ '25학년도 2학기 기준

구분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										
대상	·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(학점인정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		·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)											
연령	학부	· 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	공통	·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										
	대학원	· 만 40세 이하												
신청 대상	성적 기준	학부	학부	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										
		대학원	대학원	· 신입생(신규학습자) : 제한 없음 · 재학생(계속학습자)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										
소득 기준	학부	· 등록금: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· 생활비: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(보호 아동 포함)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	공통	·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										
	대학원	·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												
신용 요건	공통	· 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	공통	·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										
대출금리	· 변동금리(연 1.70%)		· 고정금리(연 1.70%)											
대출조건	학부	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(한도 없음)	학부	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										
		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		<table><tr><td colspan="2">구분</td><td>총 한도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대학(전문대학 포함)</td><td>4천만원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5, 6년제 대학</td><td>6천만원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의·치의·한의계열</td><td>9천만원</td></tr></table>	구분		총 한도	대학(전문대학 포함)		4천만원	5, 6년제 대학		6천만원	의·치의·한의계열
	구분		총 한도											
	대학(전문대학 포함)		4천만원											
5, 6년제 대학		6천만원												
의·치의·한의계열		9천만원												
대학원	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	대학원	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											
	<table><tr><td colspan="2">구분</td><td>총 한도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석사 과정</td><td>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</td><td>6천만원</td></tr><tr><td>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</td><td>9천만원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박사 과정*</td><td>일반·특수</td><td>9천만원</td></tr><tr><td>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</td><td>1억2천만원</td></tr></table> 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		구분		총 한도	석사 과정	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	6천만원	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	9천만원	박사 과정*	일반·특수	9천만원	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
구분		총 한도												
석사 과정	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	6천만원												
	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	9천만원												
박사 과정*	일반·특수	9천만원												
	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	1억2천만원												
대학원	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	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	· 학습비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학점인정 과정만 해당) ※ 대출금액 총 한도 : 4천만원 ※ 생활비대출 없음											
대출기간	·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('25년 기준 연소득 2,851만 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·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		학부 대학원	· 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									
			학점 은행제	· 최장 18년(거치기간 8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									
상환방법	· 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※ 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수수료 없음)		·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											

붙임 2
대출 업무 절차 (대학(원) 대출 기준)

대출단계	재 단	학 생 / 가구원	대 학
단계별	업무 내용		
대출준비	- 홈페이지 정비 - 실행 전산 시험 가동 - 업무처리기준(안) 작성 - 대출 금리 고시 - 대출 상담	(학생) - 전자서명 수단 발급 -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(가구원) - 전자서명 수단 발급 -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	- 등록(수납)일정 확정 - 수납일정 등록 - 대표계좌 등록 - 학과 정비(선취업 후진학 등)
대출신청	- 신청자 확인 - 제출서류 확정	- 금융교육 이수 - 대출신청서 작성 -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	- 신청자 확인
신청 및 서류 완료	- 제출서류 확인·처리 - 오제출, 미제출시 통보 - 서류 완료 통보 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	- (필요시) 증빙서류 제출 -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	- 제출서류 확인·처리 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 - 수납원장 업로드 - 분납정보 업로드 (대상자 존재 시)
대출심사	- 심사진행 (신용도판단정보, 연체정보, 성적, 연령, 대출한도, 중복 지원정보, 대출제한대학 등) - 거절사유 확인 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	-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(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, 연체거절, 성적거절, 연령거절, 중복지원정보 보유자, 대출 제한대학 등)	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 -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 심사 및 추천 처리
대출승인	- 대출승인 통보 - 수납원장 확인 - 수납일정 확인	-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- 대출금 지급신청	-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-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- 기등록자 관리
대출실행	- 모계좌 잔액 확인	- 대출조건 등 입력 - 대출 약정 체결(핵심설명서 제공) - 대출 실행 완료	-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- 추가 등록일정 입력
사후업무	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- 미성년자 및 '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	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	-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-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-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- 등록금 반환 (신(편)입생 추가대출 등)

※ 단,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

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위 절차 중 '일반상환학자금대출' 절차 준용 처리

붙임 3
학자금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
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‘09년	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(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)
‘10년	-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(학부생 대상) -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
‘11년	-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(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) -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(23개 대학)
‘12년	-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: B학점→C학점 -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-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: 셋째 이상 폐지(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)
‘13년	-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(학기당 100만 원→150만 원) -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
‘14년	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기존 최소 7.8% 금리를 2.9%로 인하)
‘15년	-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 -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60세 미만) -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45세 이하)
‘16년	- 대출제도 선택제(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) 도입 -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
‘17년	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제한 완화(만 35세 → 만 45세)
‘18년	-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(학기당 100만 원→150만 원) -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(C학점 이상 → 폐지) -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(소득 3구간 이하 → 소득 4구간 이하)
‘19년	- 특별추천제도→특별승인제도로 변경 및 사고·질병 예외 기준 적용 -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(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부모 →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)
‘20년	- 지연배상금을 부과체계 개편(단일금리 방식 →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 방식) -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(‘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) -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(‘약정서’ 징구)
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'21년	■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('09년 이전 대출자 대상) ■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, 해외유학 연대보증 전면폐지 ■ 특별승인제도 완화 및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■ 사망·심신장애 채무자 학자금대출 감면 시행
'22년	■ 대학원생 대상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도입(일반대학원, 전문기술석사)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폐지(C학점 이상 → 폐지, 이수학점 기준은 유지)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성적기준 개선(기존) 이수학점 무관,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(D학점) → (개선)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적용 도입) 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한도 확대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저소득층(기초·차상위)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 중 이자면제 ■ 파산 면책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면책 허용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·해제 기준 변경 ■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시행(일반상환학자금대출,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)
'23년	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모든 유형의 대학원에 지원(특수·전문대학원 포함) ■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지원 및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
'24년	■ 생활비대출 연간 공급 한도 확대(상품 무관, 학기당 150만 원 → 200만 원) ■ 다학기제 대학(학과) 대상 학자금대출 신규 공급(일반상환, 등록금 한정) 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복수기관(2개) 학자금대출 지원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지원 확대(등록금 기준, 생활비는 8구간 유지하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)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이자면제 대상 확대(기초·차상위·다자녀, 재학기간 → 재학기간+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/ 기준 중위소득 이하,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이자면제 지원)
'25년	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연체금률(3% → 2%), 연체가산금률(1.2% → 0.5%) 인하, 연체금 한도(9% → 5%) 인하, 대출금리상한 하향(국채 직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% → 110%)